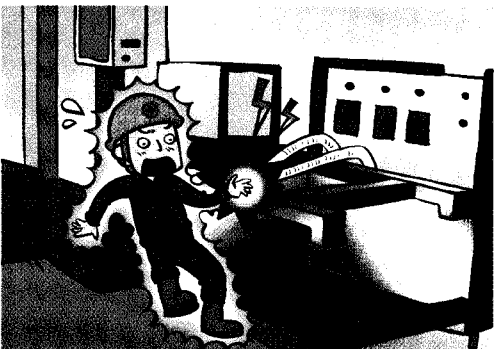


》》 고주파절단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

업종	금속제품
기인물	고주파절단기
생산품	자동차용 스프링
재해유형	감전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 물적 -



1. 재해발생개요

작업장에서 피재자가 고주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고주파 절단기의 누전에 의한 전기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저녁 9시경 야간교대 작업을 위해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작업장소 이동 중 고주파 절단기에 손이 닿는 순간 고주파 절단기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,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관리 미흡에 따른 절연손상
- (2) 교대작업 체계미흡
- (3) 작업안전수칙 미준수
- (4) 접지 미설치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

나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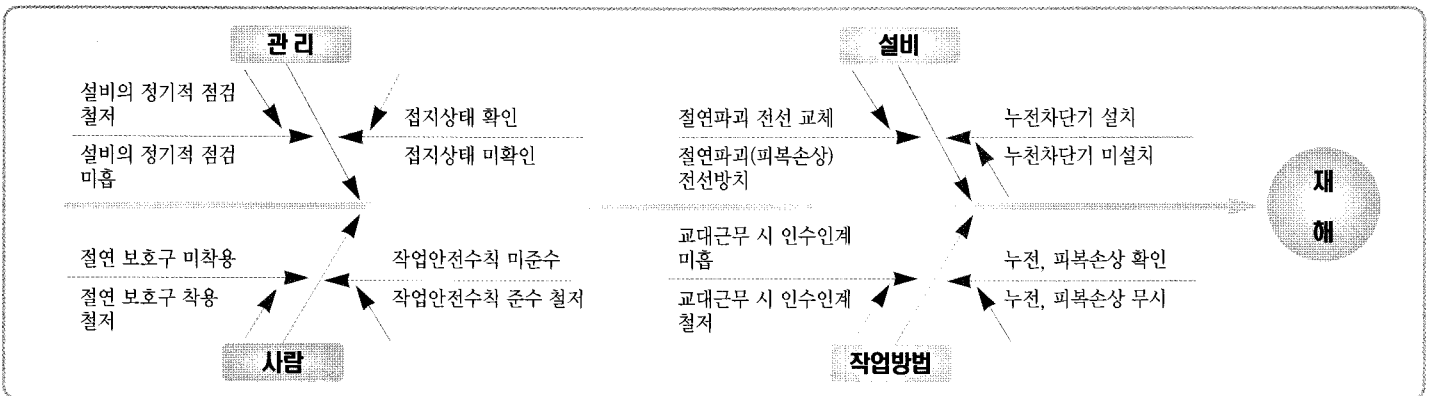
- (1) 전기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누전 유무 점검 실시
- (2) 교대작업 업무인수 인계 철저
- (3) 접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설치
- (4) 절연보호구(절연화, 절연모, 절연장갑) 착용



4. 범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》》》 롤지 측면 번호마킹 작업 중 롤지와 롤지 사이에 협착

업종	종이제품제조업
기인물	컨베이어
생산품	종이 제품
재해유형	협착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 물적 -

종이제품제조업
컨베이어
종이 제품
협착
사망 1명
-

1. 재해발생개요

리와인더 작업자인 피재자가 리와인더 콘베이어 위에서 롤지 측면에 번호마킹 작업을 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자동운전으로 전환 후 롤지 사이에 들어가 마킹 작업을 하던 중 롤지와 롤지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신규 채용자인 피재자가 롤지의 측면에 마킹작업(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나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매직으로 일련번호 기재)을 KICKER와 CP 사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롤지의 컨베이어 이송 중 롤지와 턴테이블 사이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롤지에 협착되어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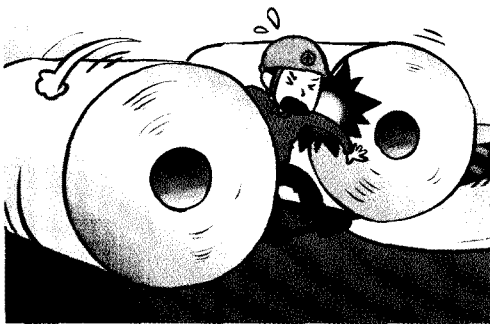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작업안전수칙 미준수
- (2) 작업방법 부적합
- (3) 보호구 착용 미흡

나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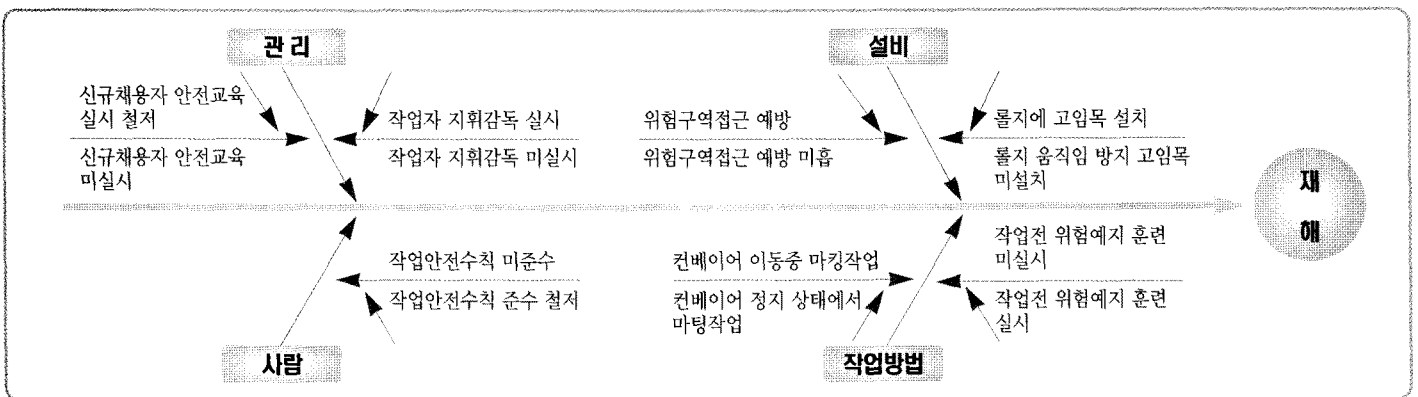
- (1)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
- (2) 작업방법개선
- (3) 보호구 착용 철저



4. 범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》》 항만 내 화물 하역 작업 중 화물 낙하로 인한 충돌

업종	육상운송업
기인물	Steel Tube
생산품	항만하역
재해유형	충돌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
물적	-



1. 재해발생개요

선내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줄걸이 작업 후 화물을 9M 지점까지 권상 중 보조권선의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화물과 달리기구 일체가 동시 낙하하여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〇〇호 카고 내 Steel Tube 하역작업을 위해 7명의 근로자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달리기구에 줄걸이 작업 실시하던 중 파재자가 이동식 크레인작업 반경으로 진입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을 이송하다 떨어진 화물에 충돌하여 사망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화물낙하
- (2)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
- (3) 신호체계 미확립
- (4)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

나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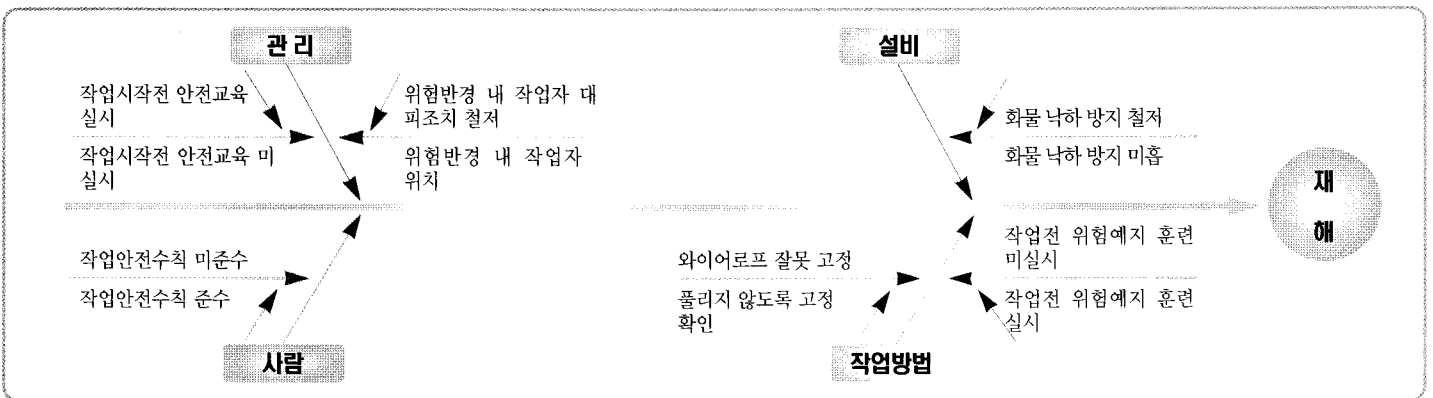
- (1) 화물낙하 방지 철저
- (2)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
- (3)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간 신호체계 확립
- (4)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



4. 범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》》》 작업발판 옮기던 중 슬래브 단부에서 추락

업종	건설업
기인물	바닥
생산품	주상복합 신축공사
재해유형	추락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 물적 -

건설업
바닥
주상복합 신축공사
추락
사망 1명
-

1. 재해발생개요

지상6층 슬래브단부에서 기동철근조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슬래브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예정인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추락(13m)하여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피재자 등 4명은 지상6층에서 전날 작업하고 남은 6개 기동의 철근배근작업(띠철근)을 실시하던 중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기동에 띠철근 배근작업을 하기 위하여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 예정인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,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추락하여 (13m)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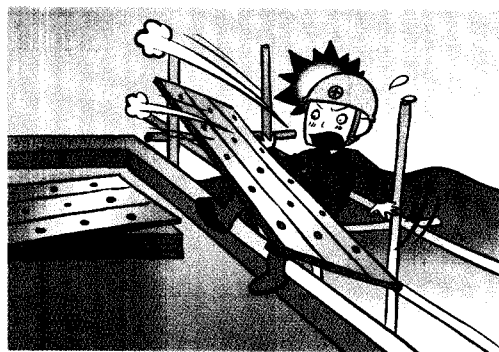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추락방지망 미설치
- (2) 안전대 등 안전보호장비 미착용
- (3) 추락방지용 난간대 미설치

나. 예방대책

- (1) 추락방지망 설치
- (2) 안전대 등 안전보호장비 착용 철저
- (3) 추락방지용 난간대 설치



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